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관련<br>3689 |
|----------|------------|

제안년월일 : 2026. 6. 17.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수립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사전 협의 대상인 서울시가 ‘주민공론화’를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동 수정안은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는 개정안의 본 취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마련된 현행 조례상의 ‘주민협의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수정주요내용

- 가.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 신설).
- 나. 안 제5조의2로 통합된 주민공론화 등의 내용 일부를 삭제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
2.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6. 그밖에 주민협의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u>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① (현행과 같음)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u> -----<br>-----<br>-----<br>-----<br>-----<br>-----<br>-----<br>-----. |
|                                                                                                                                               | <u>&lt;신 설&gt;</u> | 1. <u>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u>                                                                        |
|                                                                                                                                               | <u>&lt;신 설&gt;</u> | 2. <u>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u>                                                                                   |
|                                                                                                                                               | <u>&lt;신 설&gt;</u> | 3. <u>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u>                                                                         |
|                                                                                                                                               | <u>&lt;신 설&gt;</u> | 4. <u>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

② ~ ④ (생 략)

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하는 사항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⑥ · ⑦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  
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  
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종합  
계획 수립과 관련  
하여 국가유산청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  
협의회에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연도  
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  
회에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신 설>

제 7 조 ( 주 민 공 론 화 )

① 시장은 국가유산  
청장이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  
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6. 그밖에 주민협의  
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  
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협의  
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한 때  
에는,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p><u>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차기 품납 토성 보존·관리 종합 계획 수립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주민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립 1년 전부터 계획 확정 시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주민공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주민공론화의 추진 현황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④ 주민공론화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                             |
| <u>제7조 ~ 제10조</u> (생략) | <u>제8조 ~ 제11조</u>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u>제8조 ~ 제11조</u> (개정안과 같음) |

##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
2.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6. 그밖에 주민협의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u>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br><u>&lt;신 설&gt;</u>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br><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u><br>-----<br>-----<br>-----<br>-----<br>-----. |
| <u>&lt;신 설&gt;</u>                                                                                                                                                   | 1. <u>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시책 사항</u>                                                  |
| <u>&lt;신 설&gt;</u>                                                                                                                                                   | 2. <u>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 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3. <u>제5조의2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인근 지역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4. <u>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⑤ <u>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 <u>&lt;삭 제&gt;</u>                                                                                 |
| ⑥·⑦ (생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제5조의2(주민협의체) ① 시장은 <u>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u>                                    |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등 미래 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2. 풍납토성의 문화적 가치와 인근 지역주민의 상생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4. 시장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사항

<신 설>

제7조 ~ 제10조 (생 략)

6. 그밖에 주민협의체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차기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보고) 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